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性比)규정 명시

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함

- 안 제11조에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 지원근거 제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 T/F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은 여성이 100분의 40 이상 구성되도록”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하고,”를 “유치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발전 등 사업 수행”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은 여성이 100분의 40 이상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여성으로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 ----- 유치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발전 등 사업 수행 ----- -----.
②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미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소관 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배 영 숙
	계 장	권 순 창
	담당자	박 말 순 (480-6652)